

3) 지방세 분야

① 단기적 대응방안

우선, 감소되는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므로 주행세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관련 생산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외에 도축세를 폐지하여 축산업 경영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② 장기적 대응방안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FTA로 인해 국가간 시장통합이 진전되면서 이제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하여 생존·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생적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 비중 제고를 통한 국가/지방간 수직적 형평성은 여전히 추구되어야 하고,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세수분포의 불균형도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외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간접지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과세·감면제도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재정관련 정보 분야

우선 '08. 8월 공시되는 「개시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식부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회계기준>도 국제수준의 회계기준인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과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budget process)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공공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지방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의한 재정통계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